



#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기준

## 목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코로나 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yms and Fitness Centers)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소유자/운영자, 그 직원, 계약자, 벤더,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외 카운티의 최고 행정책임자(즉, 카운티 행정책임자, 행정인, 관리자, 또는 선출된 입법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입법기관의 의장) 또는 뉴욕시 시장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발효일을 이후 날짜로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2020년 9월 2일** 수요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발효된 이후, 해당 시설은 여기에 포함된 요건에 따라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단, 뉴욕시 외 카운티의 최고 행정책임자(즉, 카운티 행정책임자, 행정인, 관리자, 또는 선출된 입법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입법기관의 의장) 또는 뉴욕시 시장은 해당 관할권 내의 실내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수업을 제외하기로 선택하여 재개를 추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단독, 호텔, 주거 시설 및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요가/필라테스/발레 스튜디오, 복싱/킥복싱 체육관, 피트니스 부트캠프, 크로스핏(CrossFit)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및 기타 그룹 피트니스 수업(예: 스피닝, 로잉, 댄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트니스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및 호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지침을 준수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 지침은 주정부가 시범 기간으로서 초기 재개 기간 동안 지역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검사를 포함해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소유자/운영자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재개장과 관련된 공중보건 조건을 평가할 것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된 모든 변경이 포함됩니다.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하나, 요건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의 수영장 운영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용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부 부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ools and Recreational Aquatic Spray Ground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하나, 요건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된 소매 가게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필수 및 2 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레스토랑 및/또는 스낵 바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실 기반 활동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위치한 보육 센터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육아 및 주간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hild Care and Day Camp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지침에서 설정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만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전문 스포츠, 훈련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며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전문 스포츠 훈련 시설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rofessional Sports Training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서 해당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모든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의 소유자/운영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최신 요건을 알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활동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운전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전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주 몇몇 지역에서 재개 2단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안전한

재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의 포괄적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집계하는 초기 경고 대시보드를 새롭게 사용하여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전문가가 바이러스 억제 방법을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2020년 6월 12일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에 Cuomo 주지사는 주의 여러 지역이 2020년 6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재개 4단계 진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자로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의 모든 지역은 주 재개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뉴욕주 내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기준

모든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및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해당 최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연방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 주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적용됩니다.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활동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내 수용 인원이 모든 시점에 점유 증명서에 명시된 특정 지역의 최대 수용 인원의 33% 이하로 제한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원 및 고객이 포함되고 이들 모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입장이 허용됩니다.
  - 직원 또는 고객이 만 2세가 넘으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 항상 해당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그러한 개인이 항상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현재 마스크 대신 안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한] 대안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14 페이지의 **섹션 III: 절차**, 하위 **섹션 A: 선별 검진 및 검사** 아래 설명에 따라 건강 선별 검진을 완료하고 통과합니다. 또한
  - 입장 시(또는 이전에 원격 체크인을 통해) 등록하고 접촉자 추적에 사용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등록 절차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바코드 리더기, 전자 카드 리더기 및/또는 종이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가 설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최소 28 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 또는 핵심 활동이 더 짧은 거리(예: 장비 이동, 엘리베이터 이용, 의료 응급사항에 참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 및 고객을 포함해 개인 간에 항상 최소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활동은 운동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동 활동은 항상 개인 간 최소 6 피트 거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보조자가 필요한 프리웨이트 운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운동을 할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 있거나 웨이트 운동을 하는 고객은 가족 구성원 또는 단체의 한 명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보조하도록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운동 보조는 가능한 최소 시간(즉, 시간 끝기 또는 사고 활동 금지)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항상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있을 때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식사 중(예: 운동 구역과 떨어져 있는 카페와 같은 지정된 구역), 음수 중 또는 수상 환경(예: 수영장, 개별 샤워)에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단, 이들이 만 2 세가 넘으며 의학적으로 가리개를 용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 운동에 적절한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다나, 버프 및 게이터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수제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N95 마스크 또는 기존 산업 기준에 맞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따릅니다.
  - 안면 가리개 요건은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장애인법 및 뉴욕주 및 시 인권법(City Human Rights Law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용 가능한 운동 스테이션 및 운동 장비(예: 유산소 운동 장비, 프리웨이트, 싸이클, 매트)의 사용을 수정하고 재편성 및/또는 수를 제한하여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마주 보는 방향)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사용 사이에 세척 및 소독 없이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치(예: 접수 데스크)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달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에 물리적 장벽(예: 플라스틱 차폐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시에 해당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예: 수납장, 장비 대여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3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또는 장소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알립니다.
- 식사, 음수 또는 수상 환경(예: 수영장, 개별 샤워)을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고 알립니다.
- 그들이 최근에 보건부 여행 권고에 따른 주요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주를 방문했다면 격리해야 함을 알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 및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도록 알립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알립니다.
- 개인이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사용 후후에 소독 물티슈로 장비를 닦아냅니다.

## B.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최대한 대면 모임(예: 직원회의, 휴게실, 창고 등)을 제한하고 가능할 경우마다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라커룸, 화장실,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공동 샤워실을 폐쇄해야 합니다. 개인 샤워실은 책임 당사자가 매번 각 사용자가 사용 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을 보장하는 경우 운영 가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욕실에 대한 모범 관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6 피트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변기 및 싱크대 사이에 장벽 설치 및
  - 무접촉 비누 및 종이 수건 디스펜서 사용.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모든 직원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C. 현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개장 전 또는 개장 후 14 일 이내에 시설 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 지역 보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부는 규정 준수를 위해 시설을 검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 제한 준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특히 회원 기반 운영에 대하여 약속, 예약 및/또는 원격 체크인의 사용을 이행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 그룹 상호 작용이 포함된 피트니스 수업 및/또는 운동 활동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수업 및/또는 활동을 실외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받지만 이를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들은 예약, 약속, 원격 체크인 및/또는 수업 및 공간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피트니스 수업 또는 그룹 활동의 참가자 수를 다음 중 더 적은 수로 제한해야 합니다.
    - (1) 해당 공간이 항상 개인 간의 거리를 최소 6 피트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 (2) 일반적인 수업 참석 인원의 33%(즉, 스테이션, 사이클, 기타 장비를 비워두는 등), 또는
    - (3)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주정부가 적용하는 사회적 모임 제한이 허용하는 사람 수.
  - 책임 당사자는 강사와 고객을 포함한 개인이 항상 서로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장비(예: 기계, 덤벨)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이에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 장비(예: 매트)를 해당 장비에 이름을 부착하여 가지고 오도록 권장하고 다른 고객의 장비를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상 운동 수업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참가자 수를 다음 중 더 적은 수로 제한합니다.
    - (1) 해당 공간이 개인 간의 거리를 6 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 (2) 일반적인 수업 인원의 33%, 또는
    - (3)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주정부가 적용하는 사회적 모임 제한이 허용하는 사람 수
  - 각 사용 후 공유 장비를 세척 및 소독 및
  -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무 부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ools and Recreational Aquatic Spray Ground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를 따릅니다.
-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 훈련에 대해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트레이너 및 고객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고객과 트레이너는 건강 또는 안전상 위험을 다루기 위한(예: 운동 시연, 자세 또는 형태 교정) 6 피트보다 가까운 간헐적이고 짧은 접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대 6 피트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이 밀접한 접촉은 가능한 한 최소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즉, 시간 끝기 또는 사교 활동 금지).
  - 고객과 트레이너는 서로 개인 물품(예: 수건)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고객과 트레이너는 사용 사이에 모든 공유 장비(예: 운동 시연)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예: 무술, 권투) 고위험군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서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지(예: 요가, 필라테스)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별 활동과 관련된 위험 레벨에 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참조하며, 출판 시점에 위험이 큰 활동을 "개인 또는 거리를 둔 그룹 훈련 및 조직된 비/저접촉 그룹 훈련"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지정된 운동 시간에 등록하는 운동 "조 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즉, 매번 같은 사람들끼리 운동하기).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월풀, 사우나 및 스팀 룸
  - 공동 샤워
  -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내 공동 좌석 구역(예: 접수 데스크 근처의 소파)
  - 음수대(단, 물병 리필 스테이션은 열려 있을 수 있음) 및
  - 셀프 서비스 바 및 샘플러.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야외 공간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현장 인력을 감축합니다.
  - 교대근무를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합니다.
  - 시간 끝기를 줄이기 위해 운동 루틴을 미리 계획하도록 고객에게 상기시킵니다.
  - 등록 정책을 시행하여 고객이 일관되고 특정 시간에 운동하도록 집단 형성을 장려합니다.
  - 전화, 복사기, 인쇄기, 금전 등록기 등 사무실 장비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규약을 개발 및/또는
  - 사용 및 밀접한 장비 보관 사이에 적절한 세척 및 소독 없이 공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장비 보관을 폐쇄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보건부 지침 "코로나 19:비의료 시설 환경의 청소 및 소독 일반 지침"(COVID-19: General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for Non-Health Care Settings)에 따라 강화된 청소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로의 통행량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최대 수용 인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사항 준수 및

-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등록 및 건강 선별 검사를 완료하도록 보장.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 또는 체육관 장비 사이의 통로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서기가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건강 선별 검사 스테이션, 휴게실, 장비 대여 구역, 금전 등록기 구역, 라커룸) 모든 영역에서 6 피트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입구 및 출구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표지나 마커의 사용 및/또는 줄 관리 장치(예: 스탠친, 줄 거리 마커, 화살표 등)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 대기 구역을 배치하여(예: 줄, 주차장 등)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고 구역 내의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접촉(예: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를 떠나는 사람의 출구 및 기관에 입장하는 사람의 별도 입구를 지정하는 등) 및 이동(예: 직원이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출입구의 수를 제한하여 (1)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로의 이동 흐름을 관리하고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모니터링하며 (2) 등록 및 건강 선별 검진을 촉진해야 하며, 화재 안전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상품 또는 장비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접촉식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배송 진행 과정 동안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을 나르기(예: 배달 운전수로부터) 전후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싣기 시작 전 손 위생을 수행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비접촉식 등록 및 결제 옵션 또는 선불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모바일 장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II. 장소

### A. 공기 처리 시스템

- 책임 당사자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여과가 가능한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 등급 또는 업계 동일 수준 이상(예: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의 최고 수준의 여과를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15년 이상 된 건물).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위에서 언급한 최소 정화 수준(즉, 최소효율성보고조치 13 등급 이상)을 설치할 수 없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정화 시스템(즉,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 등급 이상)을 설치하면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전과 동일한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인증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와 더 낮은 여과 등급(이상적으로는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1 등급 또는 12 등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역 보건부 공무원이 검토하기 위해 그러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 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없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 또는 제어하지 않는 시설의 책임 당사자들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적절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 배치
    - 정기적으로 모든 공간 환기 시스템(예: 창문 시설)을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더 긴 시간 동안 모든 공간의 환기 시스템을 가동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신선한 공기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 환기 시스템을 설정하고 송풍기 팬을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한 점유 인원의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해당하는 경우, 모든 천장 팬을 점유 인원으로부터 위쪽으로 공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설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실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의 팬을 우선합니다.
    - 적절한 배기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만 순환시키거나 실내로 공기를 불어 넣는 팬의 사용을 피하고 및/또는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 설치

##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및 고객이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 또는 직원이 만 2세가 넘었고 그러한 가리개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그러한 개인이 항상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현재 마스크 대신 안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한] 대안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람들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안면 가리개를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과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물(예: 수영장, 개인 샤워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고객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마스크,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운동에 적절한 천(예: 수제 봉제, 킥 컷),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다나, 버프 및 게이터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얼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건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해당 안전 장비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에게 안면 가리개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달리 업무 성격상 직원에게 더 보호가 잘 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의 해당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와 같은 물체의 공유, 금전 등록기 등 공유 표면(운동 장비 제외)의 접촉을 제한할 조치를 시행하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유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접촉 후 손 씻거나 소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끼고, 벗고,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C.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청소, 소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 입구, 출구, 예약 데스크, 운동 스테이션 옆). 가능한 경우 자동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가능한 한 자신의 장비(예: 수건, 요가 매트, 그룹 수업에 사용되는 아령)를 가져오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고객이 자신의 수건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수건을 제공하고 세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물건을 세탁하고, 적절한 가장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물품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 더러운 세탁물을 취급할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더러운 세탁물을 털지 마십시오.
    - 세탁 바구니를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세탁 서비스를 마친 직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으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운영 중에는 자주 시행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매번 사용 후 직원이나 고객이 공유한 장비와 기계를 세척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 및 장비를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후에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직원에게 요구 및 고객에게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자들 사이에 장비를 "구석구석 닦을"(즉, 세척 및 소독) 수 있도록 충분한 직원을 두어야 하나, 책임 당사자는 각 사용 전 및/또는 후에 장비를 "구석구석 닦도록"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임대 장비(예: 클리트 슈즈, 요가 매트 등)는 매번 사용 후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라커룸 및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라커룸과 화장실은 적어도 2 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워크스테이션(예: 체크인 데스크)이 서로 다른 직원이 사용할 때 사이에 청소 및 소독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예: 각 고객이 사용한 사이)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청소 및 소독 제품 또는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질 또는 장비를 손상시킬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장비를 폐쇄하거나, 사용 사이 이용할 수 있는 손 소독 장소를 배치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공급하거나 및/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 19에 대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최소한 통행량이 많은 모든 구역 및 밀접 접촉면(예: 피트니스 장비, 기계, 난간, 체크인 데스크)을 포함하여 해당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시 열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직원을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음식 및 음료 공유를 금지하고(예: 셀프서비스 식사 및 음료), 직원에게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D.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시간 및 서비스를 받는 고객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E.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고객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III. 절차

####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고객 및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일 건강 선별 검진을 시행해야 하지만, 배송 직원에게 이러한 선별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 선별 검진은 개인이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입장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고객 및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에 대해 선별이 필요하며,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접촉함
  - (b) 지난 14 일 동안 진단 검사 결과 코로나 19 양성임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을 하나라도 겪음
  - (d) 지난 14 일 이내에 24 시간 이상 상당한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이 있는 주를 여행함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 의 대규모 확산이 있는 주와 검역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부 [여행 권고](#)를 참조합니다.
- 선별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간 및 건물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 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건물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원격으로 선별하거나 도착 시 선별된 개인만 입장시키십시오.
  - 체온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물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추적관찰 선별을 완료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과 더불어, 체온 검사는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를 숙지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절대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모든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식별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근무지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고객,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계약자와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일지에는 각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코로나 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 등록 절차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바코드 리더기, 전자 카드 리더기 및/또는 종이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가 설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28 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이 코로나 19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해당 개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과 확진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의 48 시간 전부터 시설에 입장했다고 기록된 모든 개인의 정보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내에 있다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의 직원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센터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직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확산을 줄이는 행동 장려, 건강한 운영 및 환경 유지, 확진자 대비에 관한 일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용주"(Gym and Fitness Center Employers)을 참고하십시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귀하가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